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길 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위급상황 발생 시 발생 및 대피안내 등 발송되는 재난문자에 외국인을 위한 정보 안내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. 조례에 외국인을 위한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재난문자 발송 근거를 마련하고,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

하도록 하여 상황별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